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23고단25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횡령

2023초기225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설수현(기소), 정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훈(국선)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3.1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 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부풀리는 방식을 통해 대출을 해 줄 테니, 그 입·출금 증빙내역을 만들

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2021. 6. 4.경 화성시 10용사2길 32(동탄1신도시) 화성동탄2동 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수취인 및 주소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연결 체크카드 1매를 우편 발송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1. 6. 7.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 D이 위 1.항 기재 계좌로 송금한 10,000,000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7,000,000원을 인출하고 남은 잔액 3,000,000원과 같은 달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 B가 위 계좌로 송금한 14,50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9.경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5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달 10.경 같은 계좌로 7,000,000원을 이체한 뒤 그 무렵 현금 인출 후 사채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17,5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기재
- 1. B의 진정서 사본(피해신고서 및 경위서 사본 포함)
-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사본
-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출력물 사본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관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모두 정상적인 대출금이라 판단하고 이체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① 성명불상자는 대출 실행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1주일가량 여러 번 금원의 입 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바, 피고인으로서는 체크카드 교부 직후 위 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대출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체크카드 교부 후 처음 입금된 돈을 포함하여 모든 금원을 인출한 점, ② 입금명의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들

인 점에서 쉽사리 대출금이라고 믿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되었다는 통지를 받았고, 그 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 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대출금 입금을 통지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 히려 피고인이 금원을 모두 인출한 직후인 2021. 6. 10.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체크카드 해지 및 금원 이체에 관하여 문의하면서 연락을 요구함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돈이 입금된 지 불과 2시간도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이체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체크카드를 해지하 였으며, 해지 경위에 관하여 지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전달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바, 이 과정에서 전달된 체크카드가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 및 체크카 드 전달의 결과 입금된 돈이 범죄 피해금인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다 른 계좌로 이체한 돈을 모두 현금 출금하여 사채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 변제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나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 필적으로나마 공소사실 기재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이 범죄 피해금임을 알면서 이를 가로채 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해지하고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끊음과 동시에 성명불상자가 마음대로 인출하 거나 이체할 수 없는 다른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된 점, 횡령한 범죄 피해금 대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옥